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85
----------	-------

제출년월일 : 2024.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및 각 조의 용어 변경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각 조의 용어 변경(제1조~제8조, 별표1, 별표2)
- 인용된 건축법 조항 변경(제3조)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4. 9. 20. ~ 2024. 10. 10.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건축법 시행령」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연 재해위험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 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표 1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별표 2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시민안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고 재 준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연재난팀장 임 영 재
	담당자 성명·전화	신태호 (행정 2790)